
2023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23. 10.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회의명	2023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일시	2023. 10. 23.(월) 14시
회의장소	영상회의
심의위원회	제2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위원 조태준 위원, 이종수 위원, 이승민 위원, 원은자 위원 ○ 배석 박성미 주무관(서기)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69호 : (영유아담당관-16996)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2023년 점검결과 보고 ○ 2023-70호 :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참가신청 및 채점 서류 일체 ○ 2023-71호 : (신속통합기획과-8389) 한강변 기본계획(안) 검토의견 제출문서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69호 : 부분인용 ○ 2023-70호 : 기각 ○ 2023-71호 : 기각

1. [의안번호 2023-69] : (영유아담당관-16996)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2023년 점검결과 보고

○ 000 위원

담당부서에서 점검보고서는 부분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 000 보육사업팀장

네.

○ 000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개별 지자체별로 해서 점검결과와 그다음에 총평, 점수 등이 기재된 그 표를 지금 공개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 000 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비공개 사유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어 사업의 목적이나 공정한 수행 및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관련 내용에서 비공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000 보육사업팀장

과도하게 비공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의신청인께서 말씀하신 법인명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문서에 있는 점검수합본은 각 공동체별 어떤 점수라든지 진술내용이라든지, 점검을 하면서 특이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자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구청 담당자 직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 담당자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검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검표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공동체의 순서가 자치구별로 쪽 연번이 매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아공동체라든지 타 어린이집이라든지 충분히 알 수 있기에 저희는 수합본 같은 경우는 비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000 위원

소관부서에서는 첨부이견으로 지표별 평가결과 내 자치구, 공동체명을 제외한 본문 공개는 가능하다 이렇게 또 추가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맞습니까?

○ 000 보육사업팀장

본문에 나와 있는 전체 총괄적인 점검결과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붙임문서에 개별 공동체별로 나와 있는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000 위원

정보공개청구인도 점검결과 수합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않습니까?

○ 000 보육사업팀장

청구한 문서에 붙임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00 위원

저희들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시가 발주한 입찰경쟁 점수표를 보여달라 그런 어떤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 업체명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 점수표를 공개한 적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합본 그 파일만 하더라도 위에 지자체 단위하고 그 지역은 전부 다 익명으로 하고 그냥 내부점수만 공개해도 지자체와 법인이 특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렇게 분쟁의 소지나 또는 예를 들어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련사항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 000 보육사업팀장

저희가 이게 자치구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 공동체별로 언제나 그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문에 나갈 때요. 그래서 그것을 가린다 해도 관심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 보실 때는 타 공동체가 이렇게 받았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그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요. 순서를 지금 있는 표에서 랜덤으로 해 가지고 순서를 바꾸면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 000 주무관

그런데 그거를 랜덤을 한다고 해도 이게 결과수합본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산출내용들이랑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술하고 확인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채용생수, 진행한 프로그램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적인 진술이 사실 들어가 있어서 분명히 익명화하더라도 특정 공동체라든가 특정 어떤 내용들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단서들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붙임문서는 저희가 공개를 지금 거부하는 거고요.

○ 000 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에서는 추가 의견으로 부분공개된 점검결과보고서에서 더 나아가서 자치구, 공동체명을 제외하고서는 본문에서는 추가 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000 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 000 위원

붙임문서는 사실 비공개 의견이고, 점검결과 기본문서에서 노란색 처진 이거 전부 다 공개 의견이시라는 거잖아요.

○ 000 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거기에 공동체명과 자치구명이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 000 위원

그런데 8번하고 9번에 이 표는 비공개하신다는 건가요? 표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 000 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

저도 기본으로 이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종합을 하면 2023년 점검결과보고서 내용은 익명처리를 하고 다 공개를 하시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붙임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비공개를 요청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팀장님?

○ 000 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 000 위원장

그리고 비공개 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주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응답하신 걸로 알고요.

일단 질의는 마무리하고 두 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붙임문서는 경영·영업상비밀 등으로 해서 비공개로 하고, 다음에 점검결과보고서에서는 기존의 부분공개에 추가해서 자치구 공동체명만 익명화하고 추가 공개를 하는 걸로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분인용이 되겠네요.

○ 000 위원장

그러면 붙임문서 비공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5호, 7호 다 적용하시는 걸로 할까요?

○ 000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5호, 7호 적용해서 붙임문서는 비공개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는 익명 처리한 후에 공개하는 걸로 주심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

○ 000 위원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첫 번째 결과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익명처리를 통해서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붙임문서 같은 경우에는 5호와 7호에 따라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69호는 “기각” 및 “부분인용”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번호 2023-70] :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참가신청

서류 및 채점서류 일체

○ 000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부분공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전부 비공개된 서류는 보니까 대표자선임계라고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 등기부등본이 각각 붙어 있고. 이게 지금 비공개돼 있더라고요. 토지 등기부등본은 제안서에 있던 거는 다 공개가 됐고.

그런데 지금 비공개 사유로 개인정보 6호 사유를 드셨어요. 그런데 6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대표자 선임계에 성명이라든가 생년월일 이런 것들은 있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이 왜 개인정보라서 비공개 사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000 주무관

토지이용동의서를 대표이사 선임계로 해서 같이 받은 사유고요. 대표자선임계를 제출할 때 등기부등본은 첨부서류였는데 등기부등본만 있는 서류는 오픈이 되었어요. 등기부등본을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서 같이 비공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등기부등본은 나갔고, 이 안에서 지금 비공개된 서류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표자선임계의 이름과 동호수, 대표자, 생년월일, 이름 정도입니다.

○ 000 위원

지금 토지 등기부등본은 공개가 돼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건물 등기부등본은 공개되면 결국 여기에 누가 동의했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빌라에 있는 모든 분이 동의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일부만 동의를 한 상태고요. 지금 청구인은 원하는 게 결국 이 빌라에 누가 동의를 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 000 주무관

맞습니다.

○ 000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누가 동의를 했는지를 비공개

하는 사유로 개인정보를 드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공개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정보공개법에 있는 다른 비공개 사유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이게 공개가 되면 영업비밀이라든가 무슨 부동산투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어떤 것 같아요?

○ 000 주무관

일단 영업비밀은 아닐 거라고 판단은 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동호수와 이름이 오픈되는 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다 명기되어 있지만, 누가 동의했는지 3분의 2 정확한 기본요건만 지켜서 제출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한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쟁을 사전에 막고자 그거에 대한 비공개처리를 요청을 드린 사항이에요.

○ 000 위원

그러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 000 주무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동의했는지 알게 되면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요?

○ 000 주무관

지금 어찌 됐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 중에 들어온 서류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약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000 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 000 주무관

건축법상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도시 건축적인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 000 위원

특별계획구역의 전제가 된다. 그렇군요.

○ 000 위원

이 빌라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건가요?

○ 000 주무관

그렇습니다. 아직 재건축, 재개발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먼저 제안한 겁니다.

○ 000 위원

여기서 이의신청 보면 동의서 수량도 알고 싶어하는데 혹시 동의서 수량 같은 거는 제공이 됐나요?

○ 000 주무관

별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동의서 수량이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지 개인정보로만 해서 이 비공개 사유로 봐야 되겠네요. 다른 부동산투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면.

○ 000 주무관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6호로 기재를 했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우리 소관부서 입장에서는 동의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래서 동의율이 몇 퍼센트 정도였는지 이것까지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나요?

○ 000 주무관

문제없습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0%가 동의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70%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일일이 공개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나요?

○ 000 주무관

그 이름까지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장

담당자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토론 이후에 다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심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일단 대표자 선임계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큰 의미 없는 문구여서 그냥 이 문서 자체를 비공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6호 사유로 비공개하면 맞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문제는 등기부등본인데요. 사실 등기부등본 자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특수성이 좀 있는 것이 이게 공개가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동의를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공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이게 분명히 누가 동의를 했고 안 했고는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비공개 쪽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6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누구한테 동의를 받았는지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7호 사유를 적용해서 비공개로 하고요. 결국은 6호하고 7호 사유를 적용을 해서 일단은 전부 비공개하는, 현재 비공개된 대상은 그대로 비공개하고자 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게 동의를 몇 명이 했는지 그래서 총량 정도는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저희 이의신청 들어온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소관부서에서 스스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6호랑 7호 사유에 따라서 비공개로 의견 주신 결로 이해하겠습니다.

○ 000 위원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000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000 위원장

저도 그러면 6호와 7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주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의 비율은 부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라라고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결로 전달을 해도 될까요?

○ 000 위원

그렇습니다.

○ 000 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6호와 7호에 따라서 기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의비율은 공개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안번호 2023-71] : (신속통합기획과-8389) 한강변 기본계획(안) 검토 의견 제출문서

○ 000 위원

한강변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2015년도에 계획 수립한 건데 이 단계가 부서 내부 검토 과정 이게 첫 단계인가요?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2015년에 수립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000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이네요.

그러면 한강변 기본계획안이 완료되는 시점이 올해 12월인 거예요?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기간은 2023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서 답변에서는 한강변 기본계획안 완료시점 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인이 행정심판까지 제기한다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인가요?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아니요. 이해관계는 모르겠습니다.

○ 000 위원

그런데 사실 내부 검토과정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계획안이 언제 완료될 시점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면 이의신청인이 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완료시점은 부서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용역기간상으로는 12월로 돼 있습니다.

○ 000 위원

예정이 거의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예정이라고 안내를 해 주면 이런 정보공개청구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특정 일자를 안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거기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 완료예정.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수립부서인 도시계획과로 문의 이렇게는 남길 수 있겠지요.

○ 000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를 더 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이 발주가 되고 완료가 되고 해서 말씀처럼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이 기본계획안이 부동산투기 우려 등으로 해서 또 비공개가 될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일단 그 부서에서 협의 온 사항으로는 2040 한강변 기본계획안이 대외비자료니까 보안에 유의하여 달라 이런 정도만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이 용역 기간 이후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런데 이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예 책자로 아마 시민들한테 이미 공개가 되는 용역일 것 같습니다.

○ 000 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종료예정일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공개가 가능하더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네.

○ 000 위원장

그러면 팀장님께서서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저희 논의 이후에 결과발표할 때 그때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부서 의견대로 아직 내부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기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료예정일을 안내해 줘서 기각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 000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 000 위원장

저도 주심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4명 중 4명이 이의신청건을 5호에 따라서 기각한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까 주심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료예정일 이후에 공개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도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 000 신속통합기획총괄팀장

다음부터는 공개처리, 비공개처리 할 때 그렇게 명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000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23-71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